

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 참여기준 안내

- ◆ '24.11.1. “노인공익활동 신청 대상자 확대 개편”에 따라 매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정 고시 이후 직역연금수급자 참여기준 안내
(‘26년 1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정 고시 이후 기준금액 재안내 예정으로, 그 전까지는 본 기준금액 활용)

□ 참여요건

-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(배우자 포함) 중 소득금액 기준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가구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가능

< '25년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가구 기준 >

가구 구분*	연 소득금액**	주택 공시가(자가) 및 전·월세 보증금 합산금액 (이하 '주택가액')
단독 가구	2,280만원 이하	2.5억원 이하 * 2주택 이상인 경우 합산금액으로 산정 예) 자가 1.5억 + 전·월세 1억 = 2.5억 참여가능
부부 가구	3,921만원 이하	

* 가구 구분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유무로만 판단

(단,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 가능할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)

**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(단독 월228만원/부부 월364만원)에서 주택 2.5억원 환산액(38만원) 공제

□ 제출서류

-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정보가 없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소득액 산정 필요

※ 부부가구의 경우, ⑤,⑦~⑨번 서류는 본인 및 배우자 서류 각각 제출

no.	구분	제출서류	용도	발급처
1	필수	참여신청서(직역연금 수급자용)	참여 신청	각 수행기관
2	필수	개인정보동의서		
3	필수	직역연금 참여확인서		
4	필수	주민등록등본		
5	필수	직역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	참여요건 및 저소득가구 여부 확인	정부24 https://www.gov.kr 공단별 홈페이지 [붙임2]
6	해당시	가족관계증명서 ※단, 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될 경우 제출 불필요		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7	필수	소득금액증명원 ※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한 경우 “소득없음 사실증명원”		정부24 https://www.gov.kr ※‘소득없음 사실증명원’은 무인민원처리기 또는 행정복지센터
8	해당시	‘자가’ 공시가 확인서류 ※ 개별주택가격확인서(단독주택), 공동주택가격확인서(아파트, 빌라 등)		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본인 및 배우자 보유
9	해당시	‘전·월세’보증금 확인서류 ※ 임대차계약서 등		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약서 보유본(사본)